2010년 9월 11일 시행
경찰채용 2차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길민영

문 1. 다음 중 헌법에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석청구권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피고인의 공판기일출석권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간이공판절차	㉥ 고문금지와 진술거부권
㉦ 전문법칙	㉧ 형사보상청구권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2조 제4항).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2조 제6항). ㉥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헌법 제12조 제2항).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28조). ㉠, ㉢, ㉤, ㉦과 같은 재판절차상의 권리는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이 문제는 2009년 2차 문제의 변형이다.
[정답] ③

문 2. 경찰수사권 독립론에 관한 설명 중 긍정설의 논거로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① 검사는 법률 전문가일 뿐이고, 수사전문가는 아니다.
② 범죄의 예방과 진압·수사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③ 대량의 범죄를 소수의 검찰인력으로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④ 경찰수사권을 독립시키려면 사법경찰관리의 자질향상 내지 전문화, 인권의식의 체질화,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한 경찰의 지방분권화 등의 기반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해설] ④ 이는 경찰수사권 독립론의 부정설 내지 시기상조설의 논거이다.
[정답] ④

문 3.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 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라고 볼 수 없다.

②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③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④ 위법한 함정수사는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해설] ①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적법하다(대법원 2007. 5. 31, 2007도1903). ②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았다면 국가가 범죄를 창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7. 12, 2006도2339). ③, ④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이는 헌법상의 적법절차 규정에 위반한 수사와 공소제기이므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제327조 제2호)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의 사유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10. 28. 2005도1247).
[정답] ②

문 4. 고소·고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
② 고소인이 피고인과 이혼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다시 피고인과 혼인한 경우 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유효조건을 상실하여 소추조건을 결하게 되므로, 결국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③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내에 행하여진 조세포탈기간이나 포탈액수의 일부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력은 그 과세기간 내의 조세포탈기간 및 포탈액수 전부에 미친다.

[해설] ①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을 그의 고유권으로 본다면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또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4, 99도3784). ② 대법원 2009. 12. 10, 2009도7681 ③ 대법원 1995. 5. 9, 95도696 ④ 고발의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친다(대법원 2009. 7. 23, 2009도3282).]
[정답] ①

문 5. 다음 중 옳은 설명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경우, 변사자의 검시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 또는 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면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은 소멸한다.

[해설] ① 변사자 검시의 주체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명령을 받아 이를 행할 뿐이다(제222조). ② 경찰관은 직무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3항). ③ 제234조 ④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8. 23, 2002도46).」
[정답] ③

문 6.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고용주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해설] ① 고용주는 변호인참여 신청권자에 들어가지 않는다(제243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상 고용주가 청구권자가 되는 것은 보석(제94조)과 체포·구속적부심사(제214조의2 제1항)의 경우이다. 그 밖에 고용주는 신뢰관계자가 될 수 있고(규칙 제84조의3 제1항), 구속영장실질심사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16 제6항).
[정답] ①

문 7.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48시간이내에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반드시 시간적 ·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것은 아니

다.
㉣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해설] ㉠ 48시간 이내가 아니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제200조의4 제6항).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2000도5701). ㉢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5. 10, 2001도300).」 ㉣ 대법원 2000. 7. 4, 99도4341. 옳은 것은 ㉣ 1개이다.
[정답] ①

문 8.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① 도망한 때
②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③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때
④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해설]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취소사유는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이다. 이는 암기해 두어야 할 사항이다.
[정답] ③

문 9.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②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바,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의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
④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해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해설] ①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영장에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3. 12, 2008도763).」 ② 대법원 2009. 3. 12, 2008도763 ③ 대법원 1998. 4. 16, 97모25 ④ 헌법과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 그 밖의 일반국민이 검사에 대하여 영장청구 등의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해 준항고로써 불복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25, 2007모82).
[정답] ④

문 10.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청구(제184조)와 증인신문청구(제221조의2)의 차이점인 것은?
① 청구시기 ② 청구권자
③ 당사자참여권 인정 ④ 청구사유의 소명

[해설] ①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은 모두 제1회 공판기일전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다. ② 증거보전은 피의자·피고인, 변호인, 검사가 청구할 수 있으나, 수사상 증인신문은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다. ③ 증거보전에는 수소법원의 증인신문과 같이 당사자의 참여권이 인정된다. 2007년 개정법상 수사상 증인신문에도 당사자의 참여권이 인정된다. ④ 증거보전청구와 증인신문청구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정답] ②

문 11.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②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이때 벌금, 과료 또는 몰수가 징역, 금고, 구류와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③ 즉결심판에 의해 선고할 수 있는 형은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 또는 고지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는 없다.

[해설]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즉결심판절차법 제10조). ② 제448조 제1항). ③ 약식절차에서는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고지할 수 없고 정식재판에 직권으로 회부하여야 하나, 즉결심판절차에서는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선고·고지할 수 있다(즉결심판절차법 제11조). ④ 즉결심판과 달리 약식명령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제453조 제1항).

[정답] ③

문 12.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②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③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판결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④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이는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해설] ③ 이 경우 법원의 이송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한다(제8조 제2항). 판결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하나 결정은 구두변론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제2항).
[정답] ③

문 13.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③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양자는 동일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증명력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문제로서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④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해설] ① 이 경우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0. 10, 2003도3282). ② 대법원 2002. 7. 12. 2002도2134 ③ 대법원 1988. 11. 8, 86도1646 ④ 대법원 1998. 12. 22. 98도2890. 이 문제는 2007년 법원 9급 2차 문제의 변형이다.
[정답] ①

문 14.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해야 한다. ㉡ 증거조사는 피고인신문 종료 후 실시한다. ㉢ 증거신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한 후 검사가 한다. ㉣ 법원이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일단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물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하기 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규칙 제132조, 제132조의2 제1항. ㉡ 증거조사는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제290조). ㉢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규칙 제133조). ㉣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규칙 제134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12조(수사기관 작성의 조서) 및 제313조(진술서 등)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규칙 제135조). 틀린 것은 ㉡, ㉢, ㉣, ㉤ 4개이다.
[정답] ④

문 15.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가장 완화되어 있는 것은?
①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②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
④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

[해설] ① 피고인의 내용인정(제312조 제2항) > ④ 실질적 진정성립 + 반대신문의 기회보장 + 특신상태(제312조 제4항) > ② 실질적 진정성립 + 특신상태(제312조 제1항, 제2항) > ③ 성립의 진정(제313조 제2항, 제1항 본문)
[정답] ③

문 16.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하고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재연의 상황을 기재하거나 이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 그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조사 과정에 입회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화상으로 인하여 서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형식적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
④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증거로 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① 대법원 1984. 5. 29, 84도378. 사법경찰관 작성의 실황조사서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은 검증조서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 취급한다는 의미이다. ② 참고인진술조서는 그 진술한 참고인의 서명날인 등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이 있어야 하는데 서명날인을 다른 사람이 대신했을 때에는 형식적 진정성립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96도2865). ③ 대법원 2007. 7. 26, 2007도3219 ④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법정에 직접 제출되어야 하고 이에 갈음하는 대체물인 진술 또는 서류가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문법칙을 선언한 것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 13, 2006도2556).」
[정답] ②

문 17. 일사부재리의 효력 또는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부과처분은 형사처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④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공소가 제기된 '당해 공소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 전체'에 미친다.

[해설] ① 대법원 1985. 5. 28, 85도21 ②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4. 12, 96도158). ③ 대법원 1986. 2. 25, 85도2664. 이 문제는 2009년 경

찰승진시험 문제와 거의 동일하다.
[정답] ②

문 18. 일부상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단순일죄, 포괄일죄 및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일죄에 대한 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볼 수는 없다.
④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판의 일부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은 경우 그 상소의 효력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피고사건 전부에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되고, 이러한 경우로는 일부 상소가 피고사건의 주위적 주문과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주문에 대한 것, 일죄의 일부에 대한 것, 경합범에 대하여 1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경합범의 일부 죄에 대한 것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해설] ① 일부상소는 수죄에 대하여 인정되고, 일죄에 대한 일부상소는 상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재판이 불가분관계를 형성하지 않을 때에는 일부상소가 허용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항). ③ 「현행 법규상 항소장에 불복의 범위를 명시하라는 규정이 없고 또 상소는 재판의 전부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다만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도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일죄에 대한 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에는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2. 10, 2004도3515). ④ 대법원 2008. 11. 20, 2008도5596 전원합의체
[정답] ③

문 19.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기피신청기각결정	㉡ 보석허가결정
㉢ 구속취소결정	㉣ 지방법원판사의 압수영장발부
㉤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 상소권회복결정
㉦ 재정신청에서 비용부담결정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제23조 제1항. ㉡ 과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으나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삭제되고, 보통항고만 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18, 97모26). ㉢ 제97조 제4항. ㉣ 수임판사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즉시항고, 준항고 등 어떠한 불복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29, 97모66). ㉤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3항. ㉥ 제347조 제2항 ㉦ 제263조의3 제3항. 이러한 사항은 모두 암기할 수 없고 문제되는 것을 역으로 기억해서 풀어낼 수밖에 없다.
[정답] ②

문 20. 소년범에 관한 형사절차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③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④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있는 때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해설] ① 판결로써가 아니라 결정으로써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0조).
[정답] ①